

< 중앙대학교 사범대 학생회 회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생회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회개혁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회원간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대학의 진보와 자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학생총회,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 단과대운영위원회, 집행국, 학과학생회로 구성한다.

제4조(권한)

- ① 본회는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 ② 본회는 회원들의 합의와 동의의 과정 속에서 사업을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의결)

- ①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 단과대운영위원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순서로 한다.
- ② 학생회장은 본회 및 학내외 위기상황 및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비상직권이 허용된다.

제2장 회 원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중앙대학교 사범대학의 학사과정 재적생으로 한다.

제7조(권리)

-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제반의 활동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④ 휴학생은 다음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권
 3. 본회의 회비 및 지원금으로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행사에 대한 참여권

제8조(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학생총회

제9조 (지위)

학생총회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1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단과대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12조(소집)

학생총회의 의장은 다음과 같은 요구가 있을 시 24시간 이내에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공고를 내야한다. 단, 긴급회의를 요하는 경우 의장은 1주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해야한다.

1. 본회의 회원 1/10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2. 단과대운영위원회 및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제13조(의결)

학생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권한)

- ① 학생총회는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② 학생총회는 정.부 학생회장 또는 각 집행국장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5조(탄핵)

- ① 학생총회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정.부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 ② 학생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각 집행부장을 탄핵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운영)

학생총회의 회의 운영 방식은 회의 소집공고 이후 단과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결정한 후 회의 전 공표한다.

제4장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

제17조(지위)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이하 단학대회)는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제18조(구성)

- ① 단학대회는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사범대 정.부학생회장, 각과 정.부학생회장, 각과 학년 정대표로 구성된다.
- ② 대표자 궐위(사고)시 재적 대표자에서 제하고 발언권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 ③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상급단위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그 단위 회원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 ① 단학대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 ② 의장이 공석일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역할을 대리한다.

제20조(소집)

- ① 정기 단학대회는 매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해야 한다.
- ② 임시 단학대회는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동의를 거치거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즉시 소집한다.
- ③ 정기 단학대회는 최소 7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임시 단학대회는 최소 3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개회 및 의결)

단학대회는 재적 대표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업무 및 권한)

단학대회는 학생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회의 제반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학생대표 자회의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①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 ② 본회 활동의 총노선과 운영위원회 및 각 집행부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권
- ③ 학생회 예산 심의 및 결산 감사권
- ④ 학생회칙 개정과 발의 및 의결권
- ⑤ 본회 전반에 대한 제정 및 의결권
- ⑥ 기타 단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 ⑦ 본회의 각 집행국장의 탄핵권

제23조(탄핵)

단학대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각 집행부장을 탄핵할 수 있다.

제24조(안건상정)

- ① 의장 또는 단과대운영위원회는 최소 3일전까지 안건을 상정한다.
- ② 다음 기준을 충족할 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1. 의장의 발의
 - 2. 단과대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 3. 단학대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발의

제25조(회의운영)

단학대회의 회의 운영 방식은 회의 소집공고 이후 단과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결정한 후 회의 전 공표한다.

제26조(회의록)

- ① 단학대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 대회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다. 회의록의 작성은 본회의 집행국장 1인이 작성하며 대표자 1인이 감독한다.

제5장 단과대운영위원회

제27조(지위)

단과대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는 단학대회로부터 위임받은 상설적인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8조(구성)

단운위는 본회의 정.부학생회장과 각과 정.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9조(소집)

- ① 정기 회의는 매주 1회 본회의 정.부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본회의 정.부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30조(개회 및 의결)

단운위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업무 및 권한)

단운위는 학생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회의 제반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상설적인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①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 ② 단학대회의 소집 요구권
- ③ 각 집행국장의 인준, 탄핵 및 출석 요구권
- ④ 각 집행국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 ⑤ 특별기구 구성권
- ⑥ 학생회 예산 편성 및 결산 동의권
- ⑦ 학생회칙 개정 발의권
- ⑧ 학교당국에 대한 교섭권
- ⑨ 기타 단운위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

제32조(탄핵)

단운위는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각 집행국장을 탄핵할 수 있다.

제6장 정.부학생회장

제33조(지위)

정.부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단학대회,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4조(선출)

정.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가운데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체회원의 과반수의 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5조(임기)

정.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당선 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6조(신분보장)

정.부학생회장은 사퇴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일체의 신분이 보장된다.

제37조(업무 및 권한)

- ① 정.부학생회장은 본회의 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 ② 학생회장은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 ③ 정.부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외 연합기구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④ 학생회장은 본회의 학생총회, 단학대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정.부학생회장은 각 집행국장과 집행부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⑥ 정.부학생회장은 집행국 업무를 총괄한다.

제7장 집행국

제38조(지위)

집행국은 단운위의 결의 사항에 입각하여 본 학생회 사업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상설적인 집행단위이자 정책단위이다.

제39조(구성)

- ① 집행국의 구성은 당해 학생회장이 단운위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구성하여 단운위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② 각 집행국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집행부원을 둘 수 있다.

제40조(선출)

- ① 집행국장은 집행국의 구성원으로,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 ② 집행국장은 단운위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③ 집행국원은 각 집행국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41조(특별부서)

학생회장은 단운위의 동의를 거쳐 상시적인 집행국 이외의 집행부서와 특별 부서를 둘 수 있다.

제8장 학과학생회

제42조(구성 및 운영)

과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은 각 과별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9장 선 거

제43조(원칙)

- ① 본회의 정.부학생회장 선거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에 의해 실시한다.
- ③ 선거진행은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과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진행한다.
- ④ 그 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44조(시기)

매 학년도 정.부학생회장 선거는 직전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한다.

제45조(유권자)

- ① 유권자는 현재 재학 중인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 ② 다음 연도 2월 졸업예정자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다음 연도 2월 졸업이 불확실한 자는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한 사람은 유권자로 인정한다.

제46조(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

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는 단운위의 협의로 구성된다.

제47조(선거공고)

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공고한다.

제48조(후보등록)

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 직전까지 각 과 회원 1/4 이상의 추천을 받아 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49조(당선)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 표 수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제50조(재선거)

- ① 최다득표자가 유효 표 수의 과반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한다.
- ② 득표 차의 수가 전체 투표의 무효표수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③ 투표율이 유권자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사범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투표를 실시한다.
- ④ 투표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유권자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단과대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51조(보궐선거)

- ① 학생회장 궐위 시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150일 미만일 경우에는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이하 순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기구에서 결정한다.
-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의 임기는 전임 학생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장 재정

제52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및 기타 수익,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54조(예·결산공고)

본회의 예·결산공고는 한 학기 단위로 한다.

제55조(예산편성)

- ① 집행국의 협의를 통해 편성된 예산은 해당학기 단학대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 ②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지출해야할 경우 단운위의 2/3 이상의 동의를 통한 의결로 허가를 받아 진행한다.

제56조(결산보고)

- ① 본회의 결산은 단학대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는다.
- ② 매월 말 단운위의 제안으로 결산 보고서를 공고한다.
- ③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학생회장은 재정 상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장 학생회칙 개정

제57조(발의)

회칙개정안은 다음 요건을 갖추면 발의할 수 있다.

1. 단운위 2/3 이상의 동의
2. 본회의 회원 1/10 이상의 연서
3. 단학대회 재적 대표자 1/2 이상의 동의

제58조(공고)

단학대회 의장은 회칙개정안을 최소 단학대회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의결)

- ① 학생회칙 개정안은 단학대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② 학생회칙을 전면 개정할 때는 단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60조(공포)

개정된 회칙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장 비상대책위원회

제61조(정의)

비상대책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인 선거기간에 선거가 무산되어서 본회의 정.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거나 정.부학생회장의 사퇴 혹은 탄핵으로 인한 궐위 시 단운위에 준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62조(구성)

구성원은 본회의 학생회칙 제5장의 구성에 준하여 구성되나 정.부학생회장은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제63조(업무 및 권한)

본회의 학생회칙 제5장에 언급된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제64조(소집 및 의결)

본회의 학생회칙 제5장 단과대운영위원회에 언급된 것과 같은 절차로 소집 및 의결을 진행하나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5조(해산)

본 위원회는 일시적인 성격의 기구로 보궐선거가 이뤄져 정.부학생회장이 선발되거나 궐위된 정.부학생회장

의 임기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13장 비상대책위원장

제66조(정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들의 투표로 뽑혀진 위원회의 대표이다.

제67조(업무 및 권한)

제6장에 명시된 업무 및 권한과 기타 사범대학 학생회칙에 명시된 정.부학생회장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업무와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 할 수 없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업무 및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제68조(선출)

-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후 비상대책위원 중 한명을 비상대책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재적인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2인 이상의 후보가 나온 경우 과반득표자가 선출된다.(단, 최다 득표수가 과반이 되지 못할 경우 최저 득표자를 제외하고 재투표를 실시하고,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단대학생대표자회의에 의하여 제정되며 3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력은 97년 회계 연도부터 실시, 적용되며 다음 회칙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단운위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 이전 학생회장은 그대로 유임된다.

제4조

국가재난, 천재지변, 감염병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본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본 회칙에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단운위의 의결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회칙을 변경하여 본 회를 운영한다.